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추가 확대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확대 하고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확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09. 05.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2.09.05.(월)**이며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청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신청·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 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1. 사업개요

□ 목 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생계 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지원규모 : 1,900여개 업체(신청서 접수 후 선별 기준에 따른 선정)

□ 주요내용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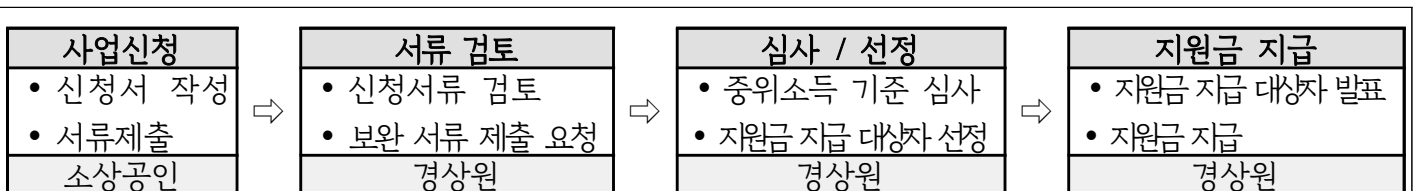
□ 공고기간 : 2022년 09월 05일(월) ~ 10월 14일(금)

□ 접수기간 : 20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시

\*온라인 접수는 9/30 10시부터 접수 시작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2. 지원절차



※ 사업신청은 2022.09.30.(금)부터 가능하며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 3. 지원대상

□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①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②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③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지원 유의 사항

1.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지점만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2. 대상 기간 내 수 개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
3.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중위소득 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1. 기준중위소득 100%(신청일 현재 취업하였거나 재창업하였을 경우 적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44,812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로 적용하여 표기

\* 출처 : 소득기준-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2. 기준중위소득 150%(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일 경우 적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출처 : 소득기준-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 4. 선정기준

- 선정순위 :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 아래 ①~③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
- ① 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 100%이내 > 120%이내 > 150%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 ② 가구원수 : 소득구간 동일 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③ 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 동일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 既 수혜자 지원 기준(중복 해당 기간: '21년 ~ '22년)
-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한 '2021년,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으로 선정될 시 既 지원액의 차액 지급
  - ② 他 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으로 선정될 시 既 지원액의 차액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재도전 장려금 수혜자
- ※ ①, ②의 경우 지원액 = 300만원 - 既 지원액(既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5. 선정제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①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폐업 사실증명원 미제출자)
  - 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
    -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 다중사업자(폐업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지원 불가능
  - ③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④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 기간 내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연매출이 "0"원인 사업자\*
    - \* 실제 영업을 했으나 연매출이 '0'원일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 [참고 1]
    - \*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위 업종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⑥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과 같은 사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 \* [참고 2]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제재 조치중인 사업자

## 6. 제출서류

### □ 작성 서류

- ① 재기장려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지원금 대상 확인서

### □ 제출 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②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
  - ⑦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⑧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 \*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 7. 접수 방법

### □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http://www.gmr.or.kr))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사전준비 필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서식)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지역센터(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 방문 신청

신청업체 소재지	접수처	
	주소	접수문의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파주시 금바위로42, 운정법조타운 5층 507호	1600-8001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남양주시 별내동 824-5 삼성힐타워 4층	
광주, 성남,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 비즈니스센터 8층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누를 것

## 8. 유의사항

### □ 지원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 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및 증빙 서류가 부실하거나 제출·보완·확인 요청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 후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사업관리와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수혜정보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 및 지역센터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의 지원금액 확인을 위한(신청 및 지원액)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경기도 ②중소벤처기업부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고용노동부	성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상호,사업장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수혜정보	수혜업체, 중복수혜 확인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신청업체 대표)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금 대상 확인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 사업의 지원금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외사항 등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한다는 결정에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제외 사항

### ▣ 제외 업종 및 제외 기업규모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업종 및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안내서식 제1호]에 부적합한 경우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안내서식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2. 지원금 환수조치 동의

환수조치 동의	위 지원금 대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조치에 동의 합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자격 위조 및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조치에 동의 합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위의 체크사항과 다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보조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2022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_\_\_\_\_ (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소규모 기준 안내서식 제1호]

##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소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1. 도매 및 소매업	G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안내서식 제2호]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 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11中	약국, 한약국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47993中	다단계 방문판매
운수 및 창고업	529中	화물 운송,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731	수의업
전문서비스업	73904中	감정평가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